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22-133 관련

제안년월일: 2022년 12월 1일

제 안 자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"2027년 12월 31일까지"에서 "2025년 12월 31일까지"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"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"를 "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의2(기금의 존속	제2조의2(기금의 존속	제2조의2(기금의 존속
기한) 기금의 존속기	기한) 기금의 존속기	기한) 기금의 존속기
한은 「지방자치단	한은 2027년 12월 31	한은 2025년 12월 31
체 기금관리기본	일까지로 한다.	일까지로 한다.
법」 제4조에 따라 2		
022년 12월 31일까지		
로 하되, 존속기한이		
경과된 이후에도 기		
금을 존치할 필요가		
있다고 인정하는 때		
에는 이 조례를 개정		
하여 존속기한을 연		
장할 수 있다.		